

제주지방법원 2022. 2. 7 선고 2021가단438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

예금보험공사

변 론 종 결 2022. 1. 10.

판 결 선 고 2022. 2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4,298㎡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2. 8. 26. 접수 제205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본문, 제1항 본문 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최석문